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1. 6. 2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40호로 2021년 6월 7일 유승용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관내 초등학생에게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나. 협 의 : 미래교육과

다. 입법예고(2021. 6. 2. ~ 6. 7.)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총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안전교육 및 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생존수영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를 2019년 1월 3일 제정하였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임.
 - 안 제3조는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대하여 원활하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영등포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 확충에 관한 규정으로 생존수영교육 운영이 교육청 주관인 만큼 서울시 교육청에 시설확충 의무가 우선하나, 관내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도 시설 확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영등포구에 소재한 공공수영장은 5개소(실내 4개소, 실외 1개소)로, 그 중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수영장은 3개소이며, 추가로 3개소의 실내 수영장 건립을 추진 중임.

〈영등포구 공공수영장 현황〉

연번	시 설 명	소유기관	관리주체
1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수영장	영등포구	영등포시설관리공단
2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수영장	영등포구	영등포시설관리공단
3	신길종합복지관 수영장	영등포구	위탁(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4	문래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서울시	위탁((재)송석문화재단)
5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실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6	신길문화체육도서관		추진중
7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추진중
8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추진중

또한 2020년 말 기준 서울시 공공수영장은 97개소(실내 88개소, 실외 9개소)로 25개구별 평균 3.88개의 공공수영장이 분포되어 있음.

〈서울시 구별 공공수영장 현황〉

자치구	공공수영장 수	자치구	공공수영장 수	자치구	공공수영장 수
종로구	3	도봉구	2	영등포구	5
중구	2	노원구	4	동작구	5
용산구	4	은평구	3	관악구	3
성동구	5	서대문구	2	서초구	7
광진구	5	마포구	3	강남구	4
동대문구	3	양천구	5	송파구	6
중랑구	4	강서구	3	강동구	5
성북구	3	구로구	6		
강북구	3	금천구	2		
계					97

- 안 제6조는 시설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 범위 안에서 경비 지원 및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는 없으므로 자체적인 시설로는 관내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수영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안 제7조는 영등포구청, 남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규정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의 생존수영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수영장 시설의 지원 및 행정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초등학생들의 평등한 수영장시설 이용 기회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 근거가 있어 보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